

의안번호	2207861
의 퇴 인	이해식의원
회 답 일	2025.3.21.
추계번호	25D0610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사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400만원(연평균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검사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174	-	-	-	-	174	35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검사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사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법의학관의 의무 등)	- 법의학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안하여야 하며, 변사체의 검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시체를 안치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체의 안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3	안 제16조(법의학관 양성기관의 지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학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학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법의학관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학관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8조(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	- 국가는 검시 중이거나 검시 예정인 시체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 병원 내에 시체 보관 시설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고 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재량규정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
2	안 제9조 (법의학관의 의무 등)	×	- 법의학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안하여야 하고, 법의학관은 변사체의 검시가 종료되기 전까지 시체를 안치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체의 안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향후 법의학관의 검시가 종료되기 전까지 시체를 안치할 장소 제공 건수 및 해당 시체의 안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3	안 제16조(법의학관 양성기관의 지정)	×	-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학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향후 법의학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수, 각 기관별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규모, 정부의 지원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18조(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	×	-국가가 국립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 병원 내에 시체 보관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다만, 향후 시체 보관 시설을 마련하는 국립병원 등의 수 및 시체 보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조에 따른 검시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종합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에 수립한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를 적용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²⁾(163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³⁾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0	2.0	2.0	2.0	2.0

2)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자료: prism.go.kr)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0백만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27백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백만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7백만원),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5백만원)

3)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2]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174	-	-	-	-	1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